

장:(2000)사회개발비

관:(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
항:(2410)주택및도시관리

세항:(2411)도시관리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제1관서] (단위:천원)

과목	예산액	기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2411 도시관리	11,806,289	12,301,789	△495,500	[균 △500,000] [도 △15,300]
100 경상예산	24,852	20,352	4,500	
120 경상적경비	14,612	10,112	4,500	
201 일반운영비	4,500	0	4,500	
	4,500	0	4,500	01 일반운영비 ○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결정 신문공고료 - 1,500,000원 X 2개사 = 3,000 ○ 인분 청소 수거료(최경주 광장 화장실) - 15,000원 X 100톤 = 1,500
200 사업예산	11,781,437	12,281,437	△500,000	[균 △500,000] [도 △15,300]
210 보조사업	9,365,293	9,865,293	△500,000	[균 △500,000] [도 △15,300]
401 시설비및부대비	9,365,293	9,865,293	△500,000	
	9,331,240	9,767,115	△435,875	01 시설비 ○ 다도해일출봉 건강성 조성(소도음육성)사업 - 경정3,473,293,000원X99.64/100=3,460,789,000원 ----- - 기정3,973,293,000원X98.84/100=3,927,203,000원 (경정) 3,460,789,000원 - (기정) 3,927,203,000원 = △466,414 (경정) 0원 - (기정) 494,200,000원 (균 △494,200) (경정) 470,799,000원 - (기정) 467,513,000원 (도 3,286) (경정) 2,989,990,000원 - (기정) 2,965,490,000원 (균 24,500) ○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

과목	예산액	기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- 경정 1,996,000,000원 X 99.64 / 100 = 1,988,815,000원 ----- - 기정 1,996,000,000원 X 98.11 / 100 = 1,958,276,000원 (경정) 1,988,815,000원 - (기정) 1,958,276,000원 = 30,539 (경정) 994,407,000원 - (기정) 979,138,000원 (균) 15,269 (경정) 84,694,000원 - (기정) 97,914,000원 (도) △13,220 (경정) 909,714,000원 - (기정) 881,224,000원 (균) 28,490
	0	62,325	△62,325	02 감리비 ○ 다도해일출봉 건강섬 조성(소도음육성)사업 - 경정 0 원 ----- - 기정 3,973,293,000원 X 0.8 / 100 = 31,786,000원 (경정) 0원 - (기정) 31,786,000원 = △31,786 (경정) 0원 - (기정) 4,000,000원 (균) △4,000 (경정) 0원 - (기정) 3,784,000원 (도) △3,784 (경정) 0원 - (기정) 24,002,000원 (균) △24,002 ○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- 경정 0 원 ----- - 기정 1,996,000,000원 X 1.53 / 100 = 30,539,000원 (경정) 0원 - (기정) 30,539,000원 = △30,539 (경정) 0원 - (기정) 15,269,000원 (균) △15,269 (경정) 0원 - (기정) 1,527,000원 (도) △1,527 (경정) 0원 - (기정) 13,743,000원 (균) △13,743
	34,053	35,853	△1,800	03 시설부대비 ○ 다도해일출봉 건강섬 조성(소도음육성)사업 - 경정 3,473,293,000원 X 0.36 / 100 = 12,504,000원 -----

과	목	예산액	기 예 산 정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- 지정3,973,293,000원X0.36/100=14,304,000원
					(경정) 12,504,000원 - (기정) 14,304,000원 = △1,800
					(경정) 0원 - (기정) 1,800,000원 (균 △1,800)
					(경정) 1,701,000원 - (기정) 1,703,000원 (도 △2)
					(경정) 10,803,000원 - (기정) 10,801,000원 (균 2)
					○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
					- 경정1,996,000,000원X0.36/100=7,185,000원
					- -----
					- 지정1,996,000,000원X0.36/100=7,185,000원
					(경정) 7,185,000원 - (기정) 7,185,000원 = 0
					(경정) 3,593,000원 - (기정) 3,593,000원 (균 0)
					(경정) 306,000원 - (기정) 359,000원 (도 △53)
					(경정) 3,286,000원 - (기정) 3,233,000원 (균 53)

과목	예산액	기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2413 지적관리	430,761	441,292	△10,531	[도 4,820]
200 사업예산	411,181	421,712	△10,531	[도 4,820]
210 보조사업	282,062	277,242	4,820	[도 4,820]
207 연구개발비	274,720	269,900	4,820	
	274,720	269,900	4,820	01 용역비 ○ GPS지적측량기준점 신설 용역 - 성립전 - 4,820,000원 X 1식 = 4,820 (도 4,820)
220 자체사업	129,119	144,470	△15,351	
207 연구개발비	42,280	48,000	△5,720	
	42,280	48,000	△5,720	02 전산개발비 ○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(3차분) - 경정 4,000원 X 10,570매 = 42,280,000원 - ----- = △5,720 - 기정 4,000원 X 12,000매 = 48,000,000원
401 시설비및부대비	10,809	20,440	△9,631	
	10,809	20,440	△9,631	01 시설비 ○ 이중등록에 따른 토지보상(고금 덕동) - 경정 10,809,000원 X 1필지 = 10,809,000원 - ----- = △9,631 - 기정 20,440,000원 X 1필지 = 20,440,000원

장:(200)사회개발비

관:(2400)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

항:(2410)주택및도시관리

세항:(2414)토지관리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제1관서] (단위:천원)

과목	예산액	기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2414 토지관리	103,237	102,900	337	
200 사업예산	67,977	67,640	337	
220 자체사업	67,977	67,640	337	
201 일반운영비	63,177	62,840	337	
	63,177	62,840	337	01 일반운영비 ○ 부동산 특조법업무 신원보증 보험가입 - 337,000원 X 1인 = 337

